

2022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및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및 사무보조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05월 16일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6명	-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관리 및 자동심사대 이용 안내 등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1명	- 사무업무 보조 및 민원응대 등

2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022. 07. 01.부터 2023. 12. 31.까지
- 급여기준 : 월 200만 원 상당(세 전)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근무시간
 - (보안관리원) 격일 근무, 06:00~22:00, 일 11시간 근무, 5시간 휴게
 - ※ 공휴일 관계없이 1일 근무 후 1일 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
 - (사무보조원) 주5일 근무,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장소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3 응시 자격 요건

□ 필수 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로 근무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근무 경력자(의무복무기간의 군 경력 제외)
- 사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사무보조원에 한함)
- 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보안관리원에 한함)
- 무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보안관리원에 한함)

*** 자격증 인정 범위**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함)

- 어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자격증 인정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TOEFL(IBT/PBT/CBT) 86점/567점/227점 이상, TEPS(NEW TEPS)700점(385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180점 이상, SNULT 50점 이상, FLEX 650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 가점 부여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유무 기재 비상근 시 근무시간 기재 필요),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채용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검정

5

채용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2. 05. 16.(월) ~ 05. 27.(금)	'22. 05. 23.(월) ~ 05. 27.(금)	'22. 06. 03.(금)	'22. 06. 10.(금)	'22. 06. 15.(수)

- 공고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 기간 : 2022. 05. 23.(월) ~ 2022. 05. 27.(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원서접수처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행정지원팀
(김해국제공항 국제신청사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봉투 표지에 '지원서 재중' 기재)

□ 제출서류

필수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⑪ 재직·경력증명서
② 응시원서	⑫ 각종 자격증 사본
③ 이력서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 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층 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 원대상자 증명서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⑥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⑨ 주민등록등본	
⑩ 주민등록초본(병역 포함, 남자에 한함)	

* ① ~ ⑧은 별지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가 아닌 클립을 이용하여 편철 후 제출할 것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발급된 서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짐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대해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합니다.(변경 사유 발생 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지원팀 (051-979-1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록 (①~⑩은 필수, ⑪~⑭는 해당자만 제출)	제출 여부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제출 ☐ 미제출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제출 ☐ 미제출
⑨ 주민등록등본	☐ 제출 ☐ 미제출
⑩ 주민등록초본(남성만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⑪ 각종 자격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⑫ 재직·경력증명서	☐ 제출 ☐ 미제출
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증명서	☐ 제출 ☐ 미제출
⑭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제출 ☐ 미제출

* 서류는 스테이플러가 아닌 클립을 이용하여 편철 바랍니다.

※※ 봉투 표지에 ‘지원서 재중’ 을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성명 : (서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 서식 2】

응 시 원 서

본인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2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2년 제1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보안관리원’ 혹은 ‘사무보조원’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이 력 서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답량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한 글		한자	
	병역사항	군필, 미필, 면제, 해당사항 없음 중 기재		
주 소				
휴대전화	본인		가족	
E-mail				
경 력	기 간	회 사 명		담 당 업 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 격 증		발 행 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	--	------	--

1. 자신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근로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40%, 글자색 : 검정색)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등 채용과 무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장단점 또는 자신만의 신념·가치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40%, 글자색 : 검정색)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등 채용과 무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본 경험 또는 예정 직무 관련 분야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서술하시오.(700자 내외)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40%, 글자색 : 검정색)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등 채용과 무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공항을 이용하면서(국내·국외 공항 불문)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을 서술
하시오.(800자 내외)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40%, 글자색 : 검정색)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등 채용과 무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할 것

【별지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이력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이력서, 범죄경력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 서식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문항 □에 √, 해당하지 않으면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